

【서식 6】

**창원시 「청년 내일통장」 약정서**

본인(\_\_\_\_\_)은 창원시 청년내일통장 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이 약정을 체결하며 이 약정에서 정한 내용에 동의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.

**제1조(목적)** 이 약정은 저소득 근로청년의 자산형성지원을 위한 창원시 청년 내일통장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사항을 명시하고 본인(\_\_\_\_\_)이 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정하기 위함이다.

**제2조(용어의 정의)** 이 약정서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참여자 : 창원시 청년 내일통장 사업에 선정된 창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청년을 말함.
2. 저축액 : 참여자 본인이 매월 입금한 금액
3. 시 지원금 : 창원시가 참여자 저축액에 대해 1:1 매칭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하며, 창원시 예산으로 지원되며 본인 저축 확인 후 익월 초에 지원
4. 적립기간 : 참여자가 사업참여 신청 시 선택한 2년 혹은 3년의 기간
5. 이자 : 참여자 저축액에서 발생하는 이자로 이자소득세를 제외한 금액
6. 지급액 : 저축액과 시 지원금, 이자를 합한 금액으로 참여자에게 지급되는 총액. 단, 중도 해지 시에는 별도의 기준에 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참여자 저축액과 그에 대한 이자만 지급
7. 협력은행 : 창원시가 참여자의 저축액을 확인하고 계좌별 시 지원금을 입금하는 것을 지원하는 은행

**제3조(참여자의 동의사항)** 본인(\_\_\_\_\_)은 창원시 청년내일 통장 사업에 참가함에 있어 아래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동의합니다.

1. 적립기간 만료시의 지급액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음
  - ① 주거비(주택구입, 임차보증금 등)
  - ② 창업·운영자금
  - ③ 교육비 및 자기개발비
  - ④ 결혼자금
  - ⑤ 대출상환(학자금 등)

2. 지급액은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창원시가 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함
3. 창원시와 협력은행은 창원시 청년 내일통장 운영을 위해 참여자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음
4. 참여자는 제7조 및 제8조의 중도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지 및 지급금 신청서를 창원시로 제출하여야 하며, 제출하지 않을 경우 창원시는 직권으로 중도해지 처리할 수 있다.
5. 신청자 본인이 경남 모다드림 청년통장,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,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, 통일부 미래행복통장 등 중앙부처 및 지자체 유사 자산형성사업 기참가 또는 참가중인 경우에는 창원시 청년내일통장 참여할 수 없음.  
(※ 단 중도해지자 중 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, 금융위원회 청년도약계좌,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참여가능)
6. 창원시는 창원시 청년 내일통장 운영지침 및 관련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음
7. 창원시는 제7조 및 제8조의 사유와 제4호 및 제5호의 위반사유를 저축완료 후 확인한 경우 중도 해지로 간주하여 처리할 수 있음.

**제4조(참여자의 의무)** 참여자는 창원시 청년 내일통장 사업에 참가함에 있어 아래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.

1. 참여자는 적립기간 동안 근로를 유지하며 창원시에 거주하여야 함. 다만, 타 시·군 전출 후 30일 이내 창원시로 재전입한 경우 창원시에 계속 거주한 것으로 간주하나 적립기간 중 1회에 한함
2. 적립기간 동안 본 통장 개설 시 정한 지정일에 저축액을 적립하여야 함
3. 적립기간 동안 병역의무 이행, 타 시·군 전출, 연락처 변경 등이 있을 경우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창원시로 변경내역을 알려야 하며 변경내역 고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중도해지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.
4. 사망했을 경우, 본인의 가족, 친지가 30일 이내에 창원시로 이 사실을 알려야 함.
5.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창원시가 요구하는 제반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함
6. 제7조 및 제8조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이를 저축완료 전에 창원시로 알려야 함.
7. 적립기간 동안 근로사실 확인을 위하여 참여자의 근무지를 사전 통보 없이 방문할 수 있으며 근로증빙서류를 창원시가 요청할 경우 제출하여야 함
8. 참여자의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중도해지 되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

**제5조(계좌개설 및 지원금 지원)**

1. 본 약정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본인이 매월 저축하는 저축액 "적립통장" 을 개설할 수 있으며 시 지원금 "지원금 통장" 이 개설됨
2. 시 지원금은 본인 저축액이 정상 적립되었을 경우에만 1:1 매칭배율로 지원됨

**제6조(저축액 및 저축액에 대한 이율)**

1. 저축액(본인 적립기간에 ✓로 표시)

적립기간	적립일	본인 저축액(매월)
<input type="checkbox"/> 2024년 7월 ~ 2026년 6월 (24개월)	매월(____)일	15만원
<input type="checkbox"/> 2024년 7월 ~ 2027년 6월 (36개월)		

2. 저축액에 대한 이율은 창원시와 협약은행(경남은행)간 협의된 이율을 적용함

**제7조(일반 중도해지)** 본인(\_\_\_\_)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창원시는 참여자에게 미리 통지하거나 독촉 없이 이 약정을 해지할 수 있으며 시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.

1. 본인이 자발적으로 본 약정을 해지하기 원하는 경우
2. 본인이 적립기간 내 연속 3회 이상 저축액을 적립하지 않거나 적립기간 중 총6회를 초과하여 저축액을 통장에 저축하지 않은 경우, 단 실직이나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, 사고 등의 사유로 적립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최대 6개월 기간을 정해 적립 유예신청을 통해 창원시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
3. 저축액에 대한 압류 등 권리하자(침해)가 발생한 경우
4. 본인이 참여자 선정 당시 소득 등을 은닉한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
5. 제3조 제5호를 위반하고 중복 가입한 경우
6. 사업 참여기간 중 타 시·군으로 주민등록 상 주소를 이전한 경우, 단, 타 시군으로 주소를 1회 이전하였다가 30일 이내에 창원시로 다시 주소를 옮긴 경우에는 제외

**제8조(특별 중도해지)** 본인(\_\_\_\_)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창원시는 참여자에게 미리 통지하거나 독촉없이 이 약정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시 지원금은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의 본인 저축액에 대한 시 지원금만 지급됩니다.

1. 본인이 사망한 경우
2. 임신·출산 등으로 근로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
3. 적립기간 중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
4. 참여기간의 절반이상을 납입후 창업한 경우

**제9조(지급기준)**

1. 본인(\_\_\_\_)이 제4조에 저축되지 아니하고 제7조 및 제8조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 적립기간 만료 시까지 저축을 완료하고, 해지 및 지급금 신청서류를 제출한 경우

- 에는 본인이 적립한 저축액, 시 지원금, 저축액에 대한 이자가 모두 지급됨
- 2. 제7조 일반 중도해지의 경우 시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으며 본인 저축액만 지급됨
- 3. 제8조 특별 중도해지의 경우 사유 발생일까지 적립된 시 지원금, 본인 저축액, 저축액에 대한 이자가 지급됨

**제10조(지급액 신청 및 지급방법)**

- 1. 참여자는 적립기간 마지막 회차 저축액을 적립한 후부터 신청이 가능함
- 2. 중도해지의 경우에는 창원시가 요청하는 해지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지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 
창원시는 서류접수 완료 후 10일 이내에 제9조에 따른 금액을 지급함
- 3. 지급액은 참여자의 적립통장으로 입금됨

**11조(약정 이외의 사항)**

- 1. 본 약정서에 명시되지 않은 그 밖의 사항은 창원시의 청년 내일통장 사업 운영 지침과 관련 규정,  
창원시와 협약은행간 업무협약서에 따름
- 2. 본 약정서의 용어 및 내용에 대한 해석은 창원시의 해석에 따름
- 3. 참여자는 창원시 청년 내일통장 사업 참가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3조 및 제4조의 내용을 숙지해야  
할 의무가 있으며,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참여자 본인에게 있음

① 본인은 약정내용(동의사항, 참여자의 의무, 계좌개설 및 창원시 지원금 지원, 저축이율,  
저축액 및 지급액의 사용용도, 중도해지, 지급기준, 지급방법 등)을 확인하였으며 창원  
청년 내일 통장 약정내용에 동의합니다. [  확인함 ]

② 이 약정을 읽고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습니다. [  확인함 ]

※ 참여자 본인의 수기작성, 자필 서명 또는 도장 날인 필수

**2024년            월            일            .**

주민등록번호 :  
연 락 처 :  
성 명 : (서명 혹은 날인)

**(참여자 본인)**

**창원시장 귀하**